

「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16일

상 주 시



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및 준용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를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인용 조문 개정

1) 제3조의2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별표 적용 →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별표2 준용

※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

▶ 특별시: 70,000원 → 100,000원(증30,000원)

▶ 광역시: 60,000원 → 80,000원(증20,000원)

▶ 그 밖의 지역: 50,000원 → 70,000원(증20,000원)

나.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준용 조문 정비

다.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절차 규정

- 1)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8항2항에 따라 위임된 가산징수 절차를 규정

라. 별표 삭제

- 1)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별표2로 준용하여 해당조례의 별표를 삭제

마. 개정에 따른 소요경비

- 1) 2022년 관외출장 숙박비 지급기준: 55,880천원(2,534일 정도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연락전화: 054)537 - 7166
- E-mail: kdh5462@korea.kr / FAX: 537-6089
- 시 홈페이지: www.sangju.go.kr(입법예고란)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 - 의견제출할 곳: (우37211)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

4. 그 밖의 사항

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붙임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: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